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드론 작전 사령부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드론작전사령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 무인기 침투('22. 12. 26.) 및 현대/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, 국방혁신 4.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('23년) 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,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,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드론작전사령부령안

제1조(설치와 임무) 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(이하 “사령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령부는 드론전력을 활용한 전략적·작전적 수준의 감시·정찰, 타격, 심리전,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하고,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2조(관할구역) 사령부의 작전·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.

제3조(사령관 등의 임명)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

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,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

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,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

제4조(사령관 등의 직무)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·감독한다.

② 전시에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,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

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,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·통제 및 감독한다.

제5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·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정원)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(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)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,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다. 제3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드론작전사령부

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 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드론작전사령관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78